

신청서류(공사양식) 목록

번호	서 식 명	제출대상
1	공급 신청서	공통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4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6	각 서	서류제출대상자 (공통서류)
7	위 임 장	해당자
8	미성년자 동의서	해당자
9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10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명단	예비신혼부부

동의서 등 작성대상

구 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비 고
청년 계층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세대원 또는 단독세대주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혼 부부 · 한부 모 가족 계층	신혼부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예비 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한부모 가족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 + 해당세대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 청년 계층의 해당세대란?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③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 필요

- 예비신혼부부 : 9.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10.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급 신청서

1. 신 청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 -

2. 신청내용

공급선택	공급대상(계층)	공급유형(타입)	비고
☐ 우선공급	☐ 기존거주자	☐ 36B	
☐ 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	☐ 29A ☐ 36A	

※ 우선공급은 서구청을 통하여 우리공사로 기 통지된 기존거주자에 한하여 공급됨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불 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대구도시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입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입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대구광역시장	청년희망주택 선정자 임대료 지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임대주택 위탁(재위탁) 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자격조사, 심사, 계약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자격정보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액, 입주자격 검정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입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대구도시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안내 등 입주자모집 절차 진행사항 안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최초공급)

확인자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해당 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신청자 (임차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작성

(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각 서

계 약 대 상 : [인 동 촌] 통합공공임대주택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해당자만)

위 임 인(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 리 인(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미성년자 동의서(해당자만)

계 약 대 상 : [인 동 촌]통합공공임대주택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날인)

. . .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대구도시개발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구 신청인 (으) (태풍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u>인동촌</u>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u>인동촌</u>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u>인동촌</u>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이	아	이
---	---	---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구도시개발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필수기재)		-		
배우자 (필수기재)		-		신청인과 동일세대 ☐ 분리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급순위	신청계층	제출서류		확인
우선공급	기존거주자 ☐	필수	1.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6. 각 서	
			7. 주민등록표등본	
			8. 주민등록표초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증명서	
		해당자만	11. 위임장	
일반공급	청년 ☐	필수	1.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6. 각 서	
			7. 주민등록표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9. 주민등록표초본	
			10. 중증장애인확인서	
			11. 수급자증명서	
			12. 위임장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필수	1.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6. 각 서	
			7. 주민등록표등본	
			8. 주민등록표초본	
			9.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10.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12. 혼인관계증명서	
			13. 임신진단서	
			14. 입양관계증명서	
			15.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16. 예비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명단	
			17. 미성년자 동의서	
			18. 자녀 기본증명서	
			19.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확인서	
			20. 수급자증명서	
			21. 위임장	